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68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 맹성규·박희승·박균택

김현정 • 이훈기 • 임오경

박홍배 · 강유정 · 김윤덕

황정아 의원(10인)

제안이유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다부처에 걸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조정·조율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그대로 혹은 증액편성될뿐만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8,800여개에 이르는 지출사업을 세세히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한시 특별 위원회로 운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연속성과 전문성의 부족 문제,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실상 국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편성상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영기준예산제도는 5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으로, 점증주의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아 한정된 국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것임. 원점에서 사업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하게 하고 이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할 것임. 또한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 원칙을 명확히 하여 국회의 예·결산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의과정상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심사·조정하고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별 지출한도 내 심사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하여 심사·조정하는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5 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지속추진여부 등을 결정함. 이 때,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을 분석 및 평가하여 영기준검토결과보고 서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함(안 제16조제7호, 제29조제3항 및 제8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869호),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 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을 "세입·세출예산 운용 상황과 중기사업계획서를"로 한다.

제16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별 지속추진여부 등을 결정한다.
- 8.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를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다.

제32조 중 "예산요구서에"를 "예산요구서와 「국회법」 제83조의3에 따른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에"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를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

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를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다.

제46조제5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를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다.

제47조제4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를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다.

제54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를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다.

제66조제4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를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다.

제70조제5항 전단 및 제6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를 각각 "예산결산위원회에"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재정사업의 영기준검토) ①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별 지속추진여부 등을 결정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의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작성한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및 재정사업의 영기준검토에 관한 적용 례) 제29조제3항 및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 ⑧ (생 략)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	9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	
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u>국회</u>	<u>기획</u>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한다.	.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 ~ ③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4
중앙관서의 <u>세입·세출예산 운</u>	<u>세입·세출예</u>
<u>용상황을</u> , 각 법률에 따라 기금	산 운용상황과 중기사업계획서
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u> </u>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	
은 자는 제외하며, 이하 "기금	
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	
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	제16조(예산의 원칙)
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 6. (생략) <신 설>

<신 설>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② (생 략) <신 설>

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 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 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 제32조(예산안의 편성) -----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

- 1. ~ 6. (현행과 같음)
- 7.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적 정성 및 타당성을 5년마다 원 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별 지 속추진여부 등을 결정한다.
- 8.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 결 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6조의 2제2항에 따른 영기준검토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

<u></u>)	

----- 예산결산위원

회에 -----.

-----예산요구서와 「국회법」

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총액계상) ① ~ ③ (생략)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 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u>예산결산특</u> 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제83소의3에 따든 국회의 재성
총량심사보고서에
0 0 11 11 11 11
<u>.</u>
제37조(총액계상) ① ~ ③ (현행
세3/조(공액세정) ① ~ ③ (연행
과 같음)
4
예산결산위원회에-
에 간 건 간 게 건 와 에
<u>.</u>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u>예산결산위</u>
이 된 제
<u>원회에</u>

- 1. ~ 4. (생략)
- ② ~ ⑥ (생 략)
-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 ④ (생 략)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와 <u>예산결산특별</u>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생략)
- 제47조(예산의 이용ㆍ이체) ① ~
 - ③ (생략)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와 <u>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u> 제출하여야 한다.
- 제54조(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 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 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 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	46조(예산의 전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예산결산위원회</u>
	<u>에</u>
	⑥ (현행과 같음)
제	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예산결산위원회에</u>
제	54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 출하여야 한다.

-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 ③ (생 략)

 - ⑤ ~ ⑧ (생 략)
-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 ④ (생 략)
 -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4호 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에 따라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 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 에 한정한다)에는 변경명세서 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 에는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 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예산결산위원회에</u>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6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u>신 설></u>

예산결산위원회에
⑥ /리웨리 리스)

- ⑦ (현행과 같음)
- 제86조의2(재정사업의 영기준검 토) ①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 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5년마 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 별 지속추진여부 등을 결정한 다.
 - ②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의 분석 및 평가 를 수행하고 작성한 영기준검 토결과보고서를 국회 예산결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